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5. 1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5.2.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6.5.4.
- 다. 상정일자 : 제20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6.5.1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박현옥

가. 제안이유

현행 조례 조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며,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회의를 통한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6개 조항)

-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안 제3조), 서류송달의 방법(안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안 제6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안 제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안 제8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안 제9조)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간 권한위임사항 규정(1개 조항)
 -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업무 위·수탁(안 제4조)
-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3개 조항)
 - 목적(안 제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 2조), 시행규칙(안 제 10조)

3. 검토보고 (김은모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세 관련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르게 제정·시행되어 통일된 자치법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2015. 8월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자치법규 기본안(표준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적 조례 마련을 위해 기본안(표준안) 내용에 '16.1월 징수체계개편 시행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은 물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그 밖에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세법 개편 내용(2011년도)

종 전	개편 후	자치단체 조례
지방세법(총칙편)	지방세기본법	마포구 구세 기본조례
지방세법(개별법)	지방세법	마포구 구세 조례
지방세법(면제경감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마포구 구세 감면조례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만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마포구 구세 기본조례 51개 조항을 10개 조항으로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비 고
51개 조항	10개 조항	

- 1)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 6개 조항
 - 안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안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안 제6조(교부 금전의 예탁), 안 제7조(채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안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안 제9조(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 2)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위임사항 규정=> 1개 조항
 - 안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업무 위·수탁)
- 3)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 3개 조항
 - 안 제1조(목적), 안 제 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 10조(시행규칙)

○ 주요 조항별 개정내용으로는

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조문 정비

1) 안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2) 안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전자송달로 하고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방법으로 함

②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구청장이 동장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사전 고지서 송달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3) 안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또한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음

② 이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채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4) **안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함
- 5) **안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함.
- 6) **안 제9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은 지방세 체납액(시세를 포함) 1천만 원으로 하되
②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간 권한위임사항 규정

- 1) **안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구청장은 서울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 시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음
② 이때에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 시에는 그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함

다.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규정

- 1) **안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2) **안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3) **안 제10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라. 동(同) 조례 삭제, 변경이동 현황

【삭제 조례 현황】 제1장(총칙), 제2조(정의), 제4조(세목),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위임), 제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제10조(일반 우편송달부), 제2장(부과징수),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등), 제13조(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제14조(미납구세 등의 열람), 제15조(허가 등의 제한), 제1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18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제19조(구세 환급금의 총당 등), 제20조(구세 환급금의 통지 등),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제22조(징수유예등의 처리), 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변경 이동조례 현황】 제3조(적용)=>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등)=>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등), 제6조의 2(전국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특례)=>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특례), 제7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제10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제9조(서류송달의 방법)=>제5조(서류송달의방법), 제17조(교부금전의예탁)=>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 “**별표 1**”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현황표 1부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2016.3.31.~4.20.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도 없으며, 2015. 8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지방세연구원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자치법규 기본안(표준안)과 기존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거나 자치단체 조례·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던 체납징수 관련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명시토록 한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 개정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동안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는 물론 지방세법 적용시 지방자치단체간 다른 지방세법 적용으로 제기되었던 주민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